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3.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78호로 2022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 및 서울시의 분리배출  
기준 개정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구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호)
- 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변경(안 제12조 별표1)
-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안 제14조제3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1. 20. ~ 2. 9.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및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은

- 안 제10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 관련 별표1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 2020. 5. 27.)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 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이하 생략)